

## 17. 農地法施行規則中 改正令(案) 立法豫告

農林部 公告 第1996-96號 1996. 12. 11

### 주 요 골 자

- 가. 농지조성비의 납부와 관련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현행 농·축·수협으로 한정되어 있는 농지조성비 수납기관을 우체국을 포함한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대하여 지로납부제도를 활용하도록 함.
- 나. 준보전임지를 70% 이상 활용하여 건축물·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 농지조성비 및 농지전용부담금을 면제하는 사업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함.
- 1) 택지개발사업·주택건설사업·대지조성사업 및 아파트지구개발사업
  - 2)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설치사업
  - 3) 공장의 설립을 위한 공장용지조성 및 공장부지조성사업
  - 4) 중소기업협동화단지조성사업·수출자유지역조성사업·유통단지조성사업
  - 5)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또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도로 농지를 전용하는 사업(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조성사업·골프장건설사업·스키장건설사업 및 유원지설치사업이나 이에 부수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제외).

### 개 정 이 유

농지조성비의 납부와 관련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현행 농·축·수협으로 한정되어 있는 농지조성비 수납기관을 우체국을 포함한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대하고,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을 면제하는 산지이용사업의 범위를 정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